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9. 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9. 8)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 지침이 공포됨에 따라 보존 보관문서 열람(복사) 수수료를 징수코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보존보관문서 열람(복사)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문서 또는 필름 열람시 1건 1회에 100원”으로 하고 “문서 또는 필름 복사시 1매마다 100원, 21매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으로 하며 “필름복제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1,000원”으로 하며 “사진 인화시는 8"×10" 흑백 1매마다 600원, 5"×7" 흑백 1매마다 300원”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대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개정요구가 '94. 3. 1일자 정부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 제477호로 개정

공포되고, '94. 3. 2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94. 3. 25일자로 서울시를 통하여 각 구에 적극 추진토록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고 '94. 7. 1부터 일반국민들에게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시행과 관련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4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년월일 : 1994년 8월 23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	--------------------------------------

1. 제안이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 지침이 공포됨에 따라 보존 보관문서 열람(복사) 수수료를 징수코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4. 보존보관 문서 열람(복사)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문서 또는 필름 열람시 1건 1회에 100원”으로 하고 “문서 또는 필름 복사시 1매마다 100원, 21매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으로 하며, “필름복제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1,000원”으로 하며 “사진인화시는 8"×10" 흑백 1매마다 600원, 5"×7" 흑백 1매마다 300원”으로 함.

